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처벌〉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19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래 · 이정문 · 박정현 · 황정아 · 김용만 · 한준호
박상혁 · 이병진 · 노종면 · 서영석 · 장종태 · 위성곤
박지원 · 정준호 · 윤호중 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 의안번호 : 11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에 따른 불출석 등의 죄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법정형
현 행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	
<u>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u>	-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 이나 감정인	-	
정당한 이유 없이 <u>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u> <u>검증을 방해한 자</u>	<u>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자</u>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u>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u>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u> ----- ----- ----- ----- 1. <u>출석하지 아니한 증인</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u>	<u>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u> <u>3.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 또는 방해한 자</u> <u>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u> <u>5.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u> <u><삭 제></u>

현행 「국회법」 제128조¹⁾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²⁾는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관계인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³⁾는 ‘정당

-
- 1)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근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위하여 요구한 서류의 제출을 행정기관이 방해하는 사례⁴⁾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아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현행 규정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자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벌칙규정은 증인 등과 관련해서는 불출석의 죄(불출석,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선서·증언 등 거부, 증인 등 출석 방해 등), 국회모욕의 죄(국회 권위 훼손, 동행명령 거부 등), 위증 등의 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4) 2022년 국정감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의원실 등에서 주무부처 및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제출 곤란함을 안내 부탁한다"는 내용을 일괄 공지하였음(한국일보, "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 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 2022. 9. 28.).

(허위 진술 등)로 처벌하면서도 보고·서류와 관련해서는 불출석의 죄(보고·서류 제출 요구 거절)로만 처벌하여 증인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와 보고·서류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증인 출석 방해 관련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개정안의 법정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u>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u>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둘째,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 또는 방해한 자’라고 표현하여 ‘거절’과 ‘방해’를 ‘또는’으로 병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수식관계상 ①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를 거절한 자'와 ②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오해가 없도록 법문표현을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방해한 자'로 풀어서 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5)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서류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서류'를 '서류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